|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21호**<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개정안이 2019년 3월 26일 국무원 제42차 상무(常務)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개정본을 공포하는 바이며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총리 리커챵(李克强)2019년 10월 11일**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2009년 7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57호로 공포; 2016년 2월 6일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의해 개정; 2019년 3월 26일 국무원 제42차 상무회의에서 개정안 통과)**제1장 총칙**1.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이하 ‘식품안전법’으로 약칭)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2. 식품생산경영자는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법률•법규와 식품안전표준을 따라야 하며 식품안전 관리 제도를 구축•완비하고 효율적인 식품안전 리스크 예방•통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식품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안전 상황을 분석하고 식품안전 사업에 대한 연구•배치와 전반적인 계획•지도를 담당하며 식품안전 감독관리와 관련된 중대한 정책•조치를 출범하고 식품안전 감독관리 책임의 실행을 독촉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식품안전위원회는 본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업무를 전개한다.
4.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는 통일적이고 권위적인 식품안전 감독관리 체제를 수립하고 식품안전 감독관리 능력을 강화한다.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와 기타 유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이행하고 조율 및 협조를 강화하며 식품안전 감독관리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향(鄕)•진(鎭) 인민정부와 가도판사처(街道辦事處)는 현(縣)급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 및 그 파출기구가 법에 의거하여 전개하는 식품안전 감독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1. 국가는 식품안전 지식을 전인교육 내용에 포함시키고 식품안전 과학 지식 및 법률 지식을 보급함으로써 사회의 전체적인 식품안전 의식을 제고한다.

**제2장 식품안전 리스크 모니터링 및 평가**1.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동급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 등 부서와 회동하여 식품안전 리스크 모니터링 협의 매커니즘을 구축하며 리스크 모니터링 데이터를 취합•분석하고 식품안전 리스크 모니터링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급 인민정부에 제출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식품안전 리스크 모니터링 분석 보고서를 직상급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에도 동시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안전 리스크 모니터링 협의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 등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2. 식품안전 리스크 모니터링 결과 잠재적 식품안전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 등 부서의 추가 조사 결과 관련 식품생산경영자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적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식품생산경영자는 즉시 자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식품의 식품안전표준 미달이 발견되었거나 인체건강 피해 초래 가능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식품안전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경영을 중단하고 식품 리콜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1.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 등 부서는 농약, 비료, 수의약, 사료 및 사료첨가제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 실시가 필요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 국무원 농업행정부서에 안전성 평가 건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원 농업행정부서는 적시에 평가를 조직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국무원 유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와 기타 유관부서는 식품안전 리스크 정보 소통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식품안전 리스크 정보 소통의 내용, 절차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한다.

**제3장 식품안전표준**1.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 농업행정부서 등 부서와 회동하여 식품안전 국가표준 계획 및 그 연간 실시 계획을 제정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그 웹사이트에 식품안전 국가표준 계획 및 그 연간 실시 계획의 초안을 발표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식품안전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 지방표준을 제정하되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식품안전 지방표준을 공포한 날로부터 30일(근무일 기준) 내에 해당 지방표준을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제출하여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비안(備案)이 이뤄진 식품안전 지방표준이 법률•법규 또는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위배됨을 발견한 경우 적시에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식품안전 지방표준이 법에 의거하여 폐지된 경우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적시에 폐지 상황을 그의 웹사이트에 공포하여야 한다.1. 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영유아용 조제식품 등 특수 식품으로 지방 특색 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식품안전 지방표준을 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식품안전표준이 공포된 후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표준에 정해진 실시 개시일이 도래하기 전에 해당 표준을 실시하고 조기실시 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3. 식품생산기업은 식품안전 국가표준 또는 지방표준의 요구사항보다 완화적인 기업표준을 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생산기업이 식품안전 국가표준 또는 지방표준보다 식품안전 지표가 엄격한 기업표준을 제정하는 경우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에 제출하여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기업표준을 제정한 식품생산기업은 해당 기업표준을 공개하여 대중의 무료 조회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제4장 식품 생산•경영**1. 식품생산경영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식품생산경영자의 생산•경영 조건에 변화가 발생하여 식품 생산•경영 요구사항을 더이상 만족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식품생산경영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허가 수속의 재이행이 필요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야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1.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최신 식품원료•식품첨가제 신품종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신품종 목록과 적용되는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적시에 공포하여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와 회동하여 전통적 식품 겸 한약재 물질 목록을 적시에 갱신하여야 한다.1.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국무원 농업행정부서 등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식품안전 전(全) 과정 추적 관련 기본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식품생산경영자가 정보화 수단을 활용하여 식품안전 추적 체계를 수립하고 완비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 등 부서는 영유아용 조제식품 등 특수 집단에게 제공되는 식품과 식품안전 리스크가 높은 기타 식품 또는 판매량이 큰 식품에 대한 추적 체계 구축을 감독검사의 중점으로 삼아야 한다.1.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 추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입고검사, 출고검사, 식품 판매 등 정보를 성실하게 기록함으로써 식품의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주요 책임자는 본 기업의 식품안전 업무에 대하여 전면적인 책임을 지며 본 기업의 식품안전 책임 제도를 수립 및 실행하고 납품업체 관리, 입고검사 및 출고검사, 생산•경영 과정 통제, 식품안전 자가검사 등 업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식품안전관리원은 기업의 주요 책임자를 협조하여 식품안전 관리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3. 식품생산경영기업은 식품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교육 및 평가를 강화하여야 한다. 식품안전관리원은 그 직위에 상응하는 식품안전 관련 법률•법규•표준 및 전문지식을 숙지하고 식품안전 관리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기업의 식품안전관리원에 대하여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감독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 지침은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가 제정하고 공포한다.
4. 식품•식품첨가제 생산경영자가 식품•식품첨가제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생산하는 경우 식품생산허가, 식품첨가제생산허가를 취득한 생산자에게 생산을 위탁하여야 하며 생산 행위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위탁생산하는 식품•식품첨가제의 안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생산을 위탁받은 업체는 법률•법규•식품안전표준 및 계약의 약정에 따라 생산을 진행하고 생산 행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위탁업체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5. 식품생산경영자는 이 조례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명록에 수록된 물질을 식품 생산•가공 현장에 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6. 식품에 대하여 방사선 조사 가공을 진행하는 경우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따라 방사선 조사 가공 식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온도•습도 등 특수 요구가 있는 식품을 저장•운송하는 경우 보온•냉장 또는 냉동 등 설비•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설비•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8.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의 저장•운송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업체의 식품안전 보장 능력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수탁업체가 식품안전 보장 요구에 따라 식품을 저장•운송하도록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탁업체는 식품 저장•운송 조건이 식품안전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식품 저장•운송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의 위탁을 받아 식품을 저장•운송하는 경우 위탁업체와 수화인의 명칭•주소지•역락방식 등 내용을 성실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은 저장•운송 완료 후 최소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비(非)식품생산경영자가 온도•습도 등 특수 요구가 있는 식품의 저장 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집조 취득일로부터 30일(근무일 기준) 내에 소재지의 현(縣)급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에 비안(備案)하여야 한다.1. 요식 서비스 제공자가 식기 집중소독 서비스 업체에 세척•소독 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 식기 집중소독 서비스 업체의 영업집조 복사본과 소득합격증명을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식기 집중소독 서비스 업체의 영업집조 복사본과 소득합격증명은 소독 식기의 사용기한이 만료된 후 최소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식기 집중소독 서비스 업체는 식기 출고검사 기록 제도를 수립하여 출고 식기의 수량, 소독일자 및 로트번호, 사용기한, 출고일자 및 위탁업체의 명칭•주소지•연락방식 등 내용을 성실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출고검사 기록은 소독 식기의 사용기한이 만료된 후 최소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소독이 이뤄진 식기는 독립포장에 업체의 명칭•주소지•연락방식, 소독일자, 로트번호 및 사용기한 등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3. 학교, 유아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공사 현장 등 단체급식을 진행하는 업체의 구내식당은 원료 통제, 식기 세척•소독, 식품 견본 비치 등 제도를 집행하여야 하며 식품안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구내식당 식품안전 자가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단체급식 진행 업체의 구내식당을 도급받아 운영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식품경영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구내식당의 식품안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단체급식 진행 업체는 수급업체가 식품안전 관리제도를 실행하도록 독촉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1. 식품생산경영자는 변질, 품질보증기간 경과 또는 회수된 식품에 현저한 표시를 하거나 명확한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단독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적시에 무해화 처리, 소각 처리 등 조치를 취하고 이를 성실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식품안전법에서 회수식품이라 함은 이미 판매가 이뤄진 후 법률•법규•식품안전표준 위반 또는 품질보증기간 경과 등 사유로 리콜되었거나 반품된 식품을 지칭하며 식품안전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매가 가능한 식품은 제외된다.1.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수요에 근거하여 필요한 식품 무해화 처리 및 소각 처리 시설을 구축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규정에 따라 정부가 구축한 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에 대한 무해화 처리 또는 소각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2. 식품집중거래시장 운영업체, 식품전시회 운영업체는 시장 개업 또는 전시회 개최 전에 소재지의 현(縣)급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온라인 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운영업체는 플랫폼에 가입한 식품경영자의 등기 정보와 거래 정보를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식품안전 감독검사, 식품안전 사건 조사처리, 식품안전 사고 처리를 전개함에 있어 관련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온라인 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운영업체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운영업체는 요구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와 그 공무원은 온라인 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운영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유전자변형식품을 생산•경영하는 경우 현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표시 방법은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가 국무원 농업행정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5. 회의, 강좌, 건강자문을 포함한 여하한 방식의 식품 허위 홍보를 금지한다.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허위 홍보 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시에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건강기능식품 생산공법에 원료 추출•정화 등 전처리 절차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생산기업은 상응하는 원료 전처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7.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생산기업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규정된 검사 항목에 따라 출고제품에 대하여 로트별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중의 특정 완전영양 조제식품은 의료기관 또는 약품소매기업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약품소매기업은 특정 완전영양 조제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식품경영허가를 취득할 필요는 없되 식품안전법과 이 조례의 식품 판매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1.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중의 특정 완전영양 조제식품 광고는 처방약 광고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기타 유형의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광고는 비(非)처방약 광고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2. 건강기능식품을 제외한 기타 식품은 건강 기능성을 주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규정된 선택성 첨가물질이 첨가된 영유아조제식품은 선택성 첨가물질로 명명하여서는 아니된다.1. 특수 식품의 라벨•설명서는 그 내용이 등록 또는 비안(備案)이 이뤄진 라벨•설명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특수 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식품 라벨•설명서의 내용이 등록 또는 비안(備案)이 이뤄진 라벨•설명서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불일치한 경우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성(省)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그의 웹사이트에 등록 또는 비안(備案)이 이뤄진 특수 식품 라벨•설명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특수 식품은 일반 식품 또는 약품과 혼합진열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제5장 식품 검사**1. 식품에 대한 추출검사는 식품안전표준, 등록 또는 비안(備案)이 이뤄진 특수 식품의 제품 기술 요구사항 및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해 확정된 검사항목과 검사방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2. 이물질•가짜를 섞은 것으로 의심되는 식품에 대하여 기존 식품안전표준에 규정된 검사항목•검사방법 및 식품안전법 제111조와 이 조례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검사항목•검사방법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보충적 검사항목•검사방법을 제정하여 식품의 추출검사, 식품안전 사건 조사처리 및 식품안전 사고 처리에 활용할 수 있다.
3. 식품안전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신청인은 재검사기관에 재검사 비용을 선납하여야 한다. 재검사 결과 식품 불합격 결론이 내려진 경우 재검사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식품 합격 결론이 내려진 경우 재검사 비용은 추출검사를 실시한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가 부담한다.

재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검사 임무의 수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1. 여하한 조직 또는 개인도 법에 따라 자격인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식품검사기관에 의해 발행된 식품 검사 정보를 발표하여서는 아니되며 상기 검사 정보를 이용하여 식품, 식품생산경영자의 등급을 평정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장 식품 수출입**1. 식품•식품첨가제를 수입하는 수입업체는 규정에 따라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 검사검역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품 관련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법률•행정법규에 규정된 합격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통상구에 도착한 수입식품은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동이 필요한 경우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안전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량으로 수입하는 산적 식품은 적하항에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서는 리스크 관리 수요에 따라 일부 식품을 대상으로 지정 통상구를 통한 수입을 시행할 수 있다.
4.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식품안전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 수출업체, 해외 생산업체 또는 그의 위탁을 받은 수입업체가 제출하는 관련 국가(지역)표준 또는 국제표준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식품안전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시적 적용을 결정하고 해당 결정을 공포한다. 일시적 적용 표준이 공포되기 전에는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제정되지 아니한 식품을 수입할 수 없다.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통용표준에 이미 포함된 식품은 식품안전법 제93조에 규정한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제정되지 아니한 식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1. 수입업체는 해외 수출업체 및 해외 생산업체 심사제도를 수립하여야 하며 해외 수출업체 및 해외 생산업체의 식품안전 리스크 통제 조치 제정•집행 상황과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이 식품안전법, 이 조례와 기타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2. 수입업체가 식품안전법 제9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을 리콜하는 경우 식품 리콜 및 처리 상황을 소재지의 현(縣)급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와 소재지의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서는 이미 등록이 이뤄진 해외 식품생산업체가 등록 요구사항을 더이상 만족시키지 아니함을 발견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시정기간에 그가 생산한 식품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시정 조치를 취한 후에도 여전히 등록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서는 해외 식품생산업체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4. 중국의 양호생산규범, 위해성 분석 및 중점 관리 포인트 체계 인증을 통과한 해외 생산업체에 대하여 인증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증 요구사항을 더이상 만족시키지 아니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증기구는 법에 의가하여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해당 인증 취소 사실을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5. 해외에서 발생한 식품안전 사건으로 중국 내에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존재하거나 중국으로 수입된 식품•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 제품에서 심각한 식품안전 문제가 발견된 경우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서는 적시에 리스크 조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하며 관련 식품•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반품 처리 또는 소각 처리
7. 조건부 수입 제한
8. 수입의 일시적 중단 또는 수입 금지
9. 수출식품•식품첨가제 생산업체는 그가 수출하는 식품•식품첨가제가 수입국(지역)의 표준 또는 계약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협정에 요구사항을 두고 있을 경우 해당 국제조약•협정의 요구사항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제7장 식품안전 사고 처리**1. 식품안전 사고는 국가 식품안전 사고 긴급대응 방안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동급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식품안전 사고 조사처리를 담당한다.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식품안전 사고 긴급대응 방안을 적시에 수정하고 보완하여야 한다.1.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품안전 사고 긴급대응 관리 매커니즘을 보완하고 긴급대응 장비를 개선하여야 하며 긴급대응 물자 비축과 긴급대응 인력 양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긴급대응 훈련 및 연습을 강화하여야 한다.
2.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식품안전 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의심되는 식품과 원료, 공구, 설비, 시설 등에 대하여 즉시 봉인 보관 등 통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식품안전 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동급 위생행정부서, 농업행정부서 등 부서와 회동하여 식품안전법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처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사고 발생 업체가 봉인 보관한 식품과 원료, 공구, 설비, 시설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봉인 보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업체가 봉인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적으로 봉인 보관하거나 사고 발생 업체에게 즉시 봉인 보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질병예방통제기구에 사고 관련 요인에 대한 유행병학 조사를 실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질병예방통제기구는 조사 종결 후 동급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 위생행정부서에 유행병학 조사 보고서를 동시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여하한 조직 또는 개인도 질병예방통제기구가 실시하는 유행병학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유관부서는 질병예방통제기구가 실시하는 유행병학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1.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농업행정부서 등 부서와 회동하여 전국의 식품안전 사고 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식품안전 감독관리 조치를 보완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줄여야 한다.

**제8장 감독관리**1. 산하에 구(區)가 설치되어 있는 시(市)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감독관리 업무 수요에 근거하여 하급 인민정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가 일상 감독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생산경영자를 대상으로 랜덤 감독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하급 인민정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를 조직하여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한 격지 감독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산하에 구(區)가 설치되어 있는 시(市)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급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의 관할인 식품안전 위법 사건을 직접적으로 조사처리할 수 있으며 기타 하급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를 조사처리 담당부서로 지정할 수도 있다.1. 국가는 식품안전검사원 제도를 구축하며 기존 자원에 의탁하여 전문검사원 인력을 양성하고 능력평가와 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써 검사원의 전문성을 제고시킨다.
2.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가 식품안전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차압(査封)•압류(扣押) 조치를 취하는 경우 차압(査封)•압류(扣押)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상황이 복잡한 경우 차압(査封)•압류(扣押) 조치를 실시한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의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기간은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온라인 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에서 플랫폼에 가입한 식품경영자의 불법경영 사례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플랫폼에 가입한 식품경영자의 불법경영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안전감독과리부서는 온라인 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운영업체의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를 소환하여 책임에 관한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4.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등 부서와 회동하여 식원성 질병 정보, 식품안전 리스크 모니터링 정보, 감독관리 정보 등을 근거로 식품에 첨가된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의심되는 비(非)식품용 화학물질과 인체건강을 해할 수있는 기타 물질의 명록과 검사방법을 제정하고 공포한다.
5.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는 식기 집중소독 서비스 업체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법률•법규, 국가의 관련 표준 및 관련 위생규범 등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황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감독검사 결과는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6. 국가는 식품안전 불법행위 제보자 장려 제도를 시행한다. 조사를 통해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제보인을 장려한다. 제보인이 그가 재직중인 기업의 식품안전 중대 불법행위를 제보하는 경우 장려를 확대한다. 유관부서는 제보인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제보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식품안전 불법행위 제보자 장려 방법은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서 등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식품안전 불법행위 제보자 장려자금은 각급 인민정부의 예산에 편입시킨다.1.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신용 우수자 연합격려 및 신용 상실자 연합징계 매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식품생산경영자의 신용기록과 결부시켜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생산경영자 블랙 리스트 제도를 구축하고 식품안전 신용 상황을 시장접근, 융자, 대출, 신용조회 등과 연결시키며 적시에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장 법률책임**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안전법 제123조~제126조, 제132조와 이 조례 제72조, 제73조에 규정한 경위가 엄중한 상황에 해당된다.
2. 불법행위에 연루된 제품의 화물가액이 2만위안 이상이거나 불법행위가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3. 식원성 질병을 초래하였고 사망 사례가 발생한 경우, 30인 이상의 식원성 질병 발병환자가 발생하였으나 사망 사례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경우
4.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5. 감독검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6. 식품안전 법률•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벌을 받은 후 1년 내에 동일 성격의 식품안전 불법행위를 또다시 실시하는 경우, 식품안전 법률•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식품안전 불법행위를 또다시 실시하는 경우
7. 경위가 엄중한 기타의 경우

경위가 엄중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처벌을 내리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무겁고 엄중하게 처벌을 내려야 한다.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안전법 제125조 제1항, 이 조례 제75조에 따라 처벌한다.
2. 이 조례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명록에 수록된 물질을 식품 생산•가공 장소에 저장하는 경우
3. 생산•경영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외한 기타 식품의 라벨•설명서에 건강 기능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4.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규정한 선택성 첨가물질로 영유아용 조제식품을 명명하는 경우
5. 생산•경영하는 특수 식품의 라벨•설명서의 내용이 등록 또는 비안(備案)이 이뤄진 라벨•설명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안전법 제126조 제1항, 이 조례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7. 식품생산경영자의 위탁을 받아 식품을 저장•운송함에 있어 규정에 따라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요식 서비스 제공자가 식기 집중소독 서비스 업체의 영업집조 복사본과 소득합격증명을 확인•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9. 식품생산경영자가 규정에 따라 변질, 품질보증기간 경과 또는 회수된 식품에 대하여 표시를 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시에 상기 식품에 대하여 무해화 처리, 소각 처리 등 조치를 취하고 성실하게 기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의료기관•약품소매기업 이외의 업체 또는 개인이 소비자에게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중의 특정 완전영양 조젝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11. 특수 식품을 일반 식품 또는 약품과 혼합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
12. 식품안전법 제125조 제1항, 제12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생산경영자의 생산•경영 행위가 식품안전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제(7)호~제(10)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식품 생산•경영 과정이 요하는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식품안전법 제126조 제1항, 이 조례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3. 식기 집중소독 서비스 업체가 규정에 따라 출고검사 기록 제도를 수립•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서가 식품안전법 제126조 제1항, 이 조례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4. 온도•습도 등 특수 요구사항이 있는 식품의 저장 사업에 종사하는 비(非)식품생산경영자, 식품집중거래시장 운영업체, 식품 전시회 운영업체가 이 규정에 따라 비안(備案) 또는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준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경위가 엄중한 경우 조업중단•영업중단을 명하고 5만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15. 회의, 강좌, 건강자문 등 방식으로 식품에 대한 허위 홍보를 하는 경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안전감독관리부서가 영향 제거를 명하고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경위가 엄중한 경우 식품안전법 제14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 위반 주체가 업체인 경우 이 조례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업체의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직접적 주관자 및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를 처벌하여야 한다.
16. 식품생산경영자가 생산•경영하는 식품이 식품안전표준에 도달하였으나 식품에 표시된 기업표준에 정해진 식품안전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가 경고를 주며 식품생산경영자에게는 해당 식품의 경영 중단을 명하고 식품생산업체에게는 시정을 명한다. 경영 중단 또는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기업표준에 정해진 식품안전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식품을 몰수하되 화물가액이 1만위안 미만인 경우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병과하고 화물가액이 1만위안 이상인 경우 화물가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17. 식품생산경영기업 등 업체가 식품안전법에 규정된 불법행위를 행하는 경우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리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체의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직접적 주관자 및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직전연도에 해당 업체로부터 취득한 수입의 1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18.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19. 법 위반 행위의 성질이 불량인 경우
20. 불법행위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식품안전법 제125조 제2항의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1.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안전법 제6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 생산•경영을 중단하거나 식품 리콜을 실시하거나 기타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식품안전 리스크를 경감 또는 제거함으로써 피해 결과가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 가볍게 처벌하거나 처벌을 경감할수 있다.
2.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 등 부서는 식품안전법 제123조에 규정된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고 그 경위가 엄중하여 행정구류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시에 사건과 관련 자료를 동급 공안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공안기관이 자료 보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식품안전감독과리부서 등 부서는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공안기관은 심사를 거쳐 행정구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을 내린 경우 적시에 사건과 관련 자료를 이송한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 등 부서로 반송하여야 한다.
3. 공안기관은 그가 발견한 식품안전 불법행위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입건 조사 후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나 법에 의거하여 행정구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시에 행정구류 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행정구류 사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법에 의거하여 기타 행정책임 추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시에 사건과 관련 자료를 동급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 등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4. 재검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검사 임무의 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가 경고를 준다.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검사 임무의 수행을 거부한 횟수가 2회에 도달하는 경우 국무원 유관부서가 그의 재검사기관 자격을 취소하고 해당 자격 취소 사실을 사회에 공개한다.
5. 법에 따라 자격인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식품검사기관에 의해 발행된 식품 검사 정보를 발표하거나 상기 검사 정보를 이용하여 식품, 식품생산경영자의 등급을 평정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하는 경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10만위안 이상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치안관리법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치안관리 처벌을 내린다.
6.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가 식품안전법과 이 조례에 따라 법을 위반한 업체 또는 개인에게 30만위안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산하에 구(區)가 설치되어 있는 시(市)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가 결정한다. 과징금 처벌의 구체적인 권한은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가 규정한다.
7.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 등 부서의 공무원의 법에 의거한 공무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치안관리법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치안관리 처벌을 내린다.
8.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 등 부서는 업체 또는 개인이 식품안전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을 어기고 허위 식품안전 정보를 조작•유포한 행위를 발견하였고 해당 행위가 치안관리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상황을 동급 공안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9.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와 그 공무원이 법을 어기고 온라인 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식품안전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10. 이 조례의 규정 위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0장 부칙**1. 이 조례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21号**《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已经2019年3月26日国务院第42次常务会议修订通过，现将修订后的《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公布，自2019年12月1日起施行。总理　李克强2019年10月11日**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2009年7月2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57号公布；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2019年3月26日国务院第42次常务会议修订通过）**第一章　总　则****第一条**　根据《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以下简称食品安全法），制定本条例。**第二条**　食品生产经营者应当依照法律、法规和食品安全标准从事生产经营活动，建立健全食品安全管理制度，采取有效措施预防和控制食品安全风险，保证食品安全。**第三条**　国务院食品安全委员会负责分析食品安全形势，研究部署、统筹指导食品安全工作，提出食品安全监督管理的重大政策措施，督促落实食品安全监督管理责任。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食品安全委员会按照本级人民政府规定的职责开展工作。**第四条**　县级以上人民政府建立统一权威的食品安全监督管理体制，加强食品安全监督管理能力建设。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和其他有关部门应当依法履行职责，加强协调配合，做好食品安全监督管理工作。乡镇人民政府和街道办事处应当支持、协助县级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及其派出机构依法开展食品安全监督管理工作。**第五条**　国家将食品安全知识纳入国民素质教育内容，普及食品安全科学常识和法律知识，提高全社会的食品安全意识。**第二章　食品安全风险监测和评估**\***第六条**　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会同同级食品安全监督管理等部门建立食品安全风险监测会商机制，汇总、分析风险监测数据，研判食品安全风险，形成食品安全风险监测分析报告，报本级人民政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还应当将食品安全风险监测分析报告同时报上一级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食品安全风险监测会商的具体办法由国务院卫生行政部门会同国务院食品安全监督管理等部门制定。**第七条**　食品安全风险监测结果表明存在食品安全隐患，食品安全监督管理等部门经进一步调查确认有必要通知相关食品生产经营者的，应当及时通知。接到通知的食品生产经营者应当立即进行自查，发现食品不符合食品安全标准或者有证据证明可能危害人体健康的，应当依照食品安全法第六十三条的规定停止生产、经营，实施食品召回，并报告相关情况。**第八条**　国务院卫生行政、食品安全监督管理等部门发现需要对农药、肥料、兽药、饲料和饲料添加剂等进行安全性评估的，应当向国务院农业行政部门提出安全性评估建议。国务院农业行政部门应当及时组织评估，并向国务院有关部门通报评估结果。**第九条**　国务院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和其他有关部门建立食品安全风险信息交流机制，明确食品安全风险信息交流的内容、程序和要求。**第三章　食品安全标准****第十条**　国务院卫生行政部门会同国务院食品安全监督管理、农业行政等部门制定食品安全国家标准规划及其年度实施计划。国务院卫生行政部门应当在其网站上公布食品安全国家标准规划及其年度实施计划的草案，公开征求意见。**第十一条**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依照食品安全法第二十九条的规定制定食品安全地方标准，应当公开征求意见。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应当自食品安全地方标准公布之日起30个工作日内，将地方标准报国务院卫生行政部门备案。国务院卫生行政部门发现备案的食品安全地方标准违反法律、法规或者食品安全国家标准的，应当及时予以纠正。食品安全地方标准依法废止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应当及时在其网站上公布废止情况。**第十二条**　保健食品、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婴幼儿配方食品等特殊食品不属于地方特色食品，不得对其制定食品安全地方标准。**第十三条**　食品安全标准公布后，食品生产经营者可以在食品安全标准规定的实施日期之前实施并公开提前实施情况。**第十四条**　食品生产企业不得制定低于食品安全国家标准或者地方标准要求的企业标准。食品生产企业制定食品安全指标严于食品安全国家标准或者地方标准的企业标准的，应当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备案。食品生产企业制定企业标准的，应当公开，供公众免费查阅。**第四章　食品生产经营****第十五条**　食品生产经营许可的有效期为5年。食品生产经营者的生产经营条件发生变化，不再符合食品生产经营要求的，食品生产经营者应当立即采取整改措施；需要重新办理许可手续的，应当依法办理。**第十六条**　国务院卫生行政部门应当及时公布新的食品原料、食品添加剂新品种和食品相关产品新品种目录以及所适用的食品安全国家标准。对按照传统既是食品又是中药材的物质目录，国务院卫生行政部门会同国务院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应当及时更新。**第十七条**　国务院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会同国务院农业行政等有关部门明确食品安全全程追溯基本要求，指导食品生产经营者通过信息化手段建立、完善食品安全追溯体系。食品安全监督管理等部门应当将婴幼儿配方食品等针对特定人群的食品以及其他食品安全风险较高或者销售量大的食品的追溯体系建设作为监督检查的重点。**第十八条**　食品生产经营者应当建立食品安全追溯体系，依照食品安全法的规定如实记录并保存进货查验、出厂检验、食品销售等信息，保证食品可追溯。**第十九条**　食品生产经营企业的主要负责人对本企业的食品安全工作全面负责，建立并落实本企业的食品安全责任制，加强供货者管理、进货查验和出厂检验、生产经营过程控制、食品安全自查等工作。食品生产经营企业的食品安全管理人员应当协助企业主要负责人做好食品安全管理工作。**第二十条**　食品生产经营企业应当加强对食品安全管理人员的培训和考核。食品安全管理人员应当掌握与其岗位相适应的食品安全法律、法规、标准和专业知识，具备食品安全管理能力。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应当对企业食品安全管理人员进行随机监督抽查考核。考核指南由国务院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制定、公布。**第二十一条**　食品、食品添加剂生产经营者委托生产食品、食品添加剂的，应当委托取得食品生产许可、食品添加剂生产许可的生产者生产，并对其生产行为进行监督，对委托生产的食品、食品添加剂的安全负责。受托方应当依照法律、法规、食品安全标准以及合同约定进行生产，对生产行为负责，并接受委托方的监督。**第二十二条**　食品生产经营者不得在食品生产、加工场所贮存依照本条例第六十三条规定制定的名录中的物质。**第二十三条**　对食品进行辐照加工，应当遵守食品安全国家标准，并按照食品安全国家标准的要求对辐照加工食品进行检验和标注。**第二十四条**　贮存、运输对温度、湿度等有特殊要求的食品，应当具备保温、冷藏或者冷冻等设备设施，并保持有效运行。**第二十五条**　食品生产经营者委托贮存、运输食品的，应当对受托方的食品安全保障能力进行审核，并监督受托方按照保证食品安全的要求贮存、运输食品。受托方应当保证食品贮存、运输条件符合食品安全的要求，加强食品贮存、运输过程管理。接受食品生产经营者委托贮存、运输食品的，应当如实记录委托方和收货方的名称、地址、联系方式等内容。记录保存期限不得少于贮存、运输结束后2年。非食品生产经营者从事对温度、湿度等有特殊要求的食品贮存业务的，应当自取得营业执照之日起30个工作日内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备案。**第二十六条**　餐饮服务提供者委托餐具饮具集中消毒服务单位提供清洗消毒服务的，应当查验、留存餐具饮具集中消毒服务单位的营业执照复印件和消毒合格证明。保存期限不得少于消毒餐具饮具使用期限到期后6个月。**第二十七条**　餐具饮具集中消毒服务单位应当建立餐具饮具出厂检验记录制度，如实记录出厂餐具饮具的数量、消毒日期和批号、使用期限、出厂日期以及委托方名称、地址、联系方式等内容。出厂检验记录保存期限不得少于消毒餐具饮具使用期限到期后6个月。消毒后的餐具饮具应当在独立包装上标注单位名称、地址、联系方式、消毒日期和批号以及使用期限等内容。**第二十八条**　学校、托幼机构、养老机构、建筑工地等集中用餐单位的食堂应当执行原料控制、餐具饮具清洗消毒、食品留样等制度，并依照食品安全法第四十七条的规定定期开展食堂食品安全自查。承包经营集中用餐单位食堂的，应当依法取得食品经营许可，并对食堂的食品安全负责。集中用餐单位应当督促承包方落实食品安全管理制度，承担管理责任。**第二十九条**　食品生产经营者应当对变质、超过保质期或者回收的食品进行显著标示或者单独存放在有明确标志的场所，及时采取无害化处理、销毁等措施并如实记录。食品安全法所称回收食品，是指已经售出，因违反法律、法规、食品安全标准或者超过保质期等原因，被召回或者退回的食品，不包括依照食品安全法第六十三条第三款的规定可以继续销售的食品。**第三十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根据需要建设必要的食品无害化处理和销毁设施。食品生产经营者可以按照规定使用政府建设的设施对食品进行无害化处理或者予以销毁。**第三十一条**　食品集中交易市场的开办者、食品展销会的举办者应当在市场开业或者展销会举办前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报告。**第三十二条**　网络食品交易第三方平台提供者应当妥善保存入网食品经营者的登记信息和交易信息。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开展食品安全监督检查、食品安全案件调查处理、食品安全事故处置确需了解有关信息的，经其负责人批准，可以要求网络食品交易第三方平台提供者提供，网络食品交易第三方平台提供者应当按照要求提供。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及其工作人员对网络食品交易第三方平台提供者提供的信息依法负有保密义务。**第三十三条**　生产经营转基因食品应当显著标示，标示办法由国务院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会同国务院农业行政部门制定。**第三十四条**　禁止利用包括会议、讲座、健康咨询在内的任何方式对食品进行虚假宣传。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发现虚假宣传行为的，应当依法及时处理。**第三十五条**　保健食品生产工艺有原料提取、纯化等前处理工序的，生产企业应当具备相应的原料前处理能力。**第三十六条**　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生产企业应当按照食品安全国家标准规定的检验项目对出厂产品实施逐批检验。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中的特定全营养配方食品应当通过医疗机构或者药品零售企业向消费者销售。医疗机构、药品零售企业销售特定全营养配方食品的，不需要取得食品经营许可，但是应当遵守食品安全法和本条例关于食品销售的规定。**第三十七条**　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中的特定全营养配方食品广告按照处方药广告管理，其他类别的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广告按照非处方药广告管理。**第三十八条**　对保健食品之外的其他食品，不得声称具有保健功能。对添加食品安全国家标准规定的选择性添加物质的婴幼儿配方食品，不得以选择性添加物质命名。**第三十九条**　特殊食品的标签、说明书内容应当与注册或者备案的标签、说明书一致。销售特殊食品，应当核对食品标签、说明书内容是否与注册或者备案的标签、说明书一致，不一致的不得销售。省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应当在其网站上公布注册或者备案的特殊食品的标签、说明书。特殊食品不得与普通食品或者药品混放销售。**第五章　食品检验****第四十条**　对食品进行抽样检验，应当按照食品安全标准、注册或者备案的特殊食品的产品技术要求以及国家有关规定确定的检验项目和检验方法进行。**第四十一条**　对可能掺杂掺假的食品，按照现有食品安全标准规定的检验项目和检验方法以及依照食品安全法第一百一十一条和本条例第六十三条规定制定的检验项目和检验方法无法检验的，国务院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可以制定补充检验项目和检验方法，用于对食品的抽样检验、食品安全案件调查处理和食品安全事故处置。**第四十二条**　依照食品安全法第八十八条的规定申请复检的，申请人应当向复检机构先行支付复检费用。复检结论表明食品不合格的，复检费用由复检申请人承担；复检结论表明食品合格的，复检费用由实施抽样检验的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承担。复检机构无正当理由不得拒绝承担复检任务。**第四十三条**　任何单位和个人不得发布未依法取得资质认定的食品检验机构出具的食品检验信息，不得利用上述检验信息对食品、食品生产经营者进行等级评定，欺骗、误导消费者。**第六章　食品进出口****第四十四条**　进口商进口食品、食品添加剂，应当按照规定向出入境检验检疫机构报检，如实申报产品相关信息，并随附法律、行政法规规定的合格证明材料。**第四十五条**　进口食品运达口岸后，应当存放在出入境检验检疫机构指定或者认可的场所；需要移动的，应当按照出入境检验检疫机构的要求采取必要的安全防护措施。大宗散装进口食品应当在卸货口岸进行检验。**第四十六条**　国家出入境检验检疫部门根据风险管理需要，可以对部分食品实行指定口岸进口。**第四十七条**　国务院卫生行政部门依照食品安全法第九十三条的规定对境外出口商、境外生产企业或者其委托的进口商提交的相关国家（地区）标准或者国际标准进行审查，认为符合食品安全要求的，决定暂予适用并予以公布；暂予适用的标准公布前，不得进口尚无食品安全国家标准的食品。食品安全国家标准中通用标准已经涵盖的食品不属于食品安全法第九十三条规定的尚无食品安全国家标准的食品。**第四十八条**　进口商应当建立境外出口商、境外生产企业审核制度，重点审核境外出口商、境外生产企业制定和执行食品安全风险控制措施的情况以及向我国出口的食品是否符合食品安全法、本条例和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以及食品安全国家标准的要求。**第四十九条**　进口商依照食品安全法第九十四条第三款的规定召回进口食品的，应当将食品召回和处理情况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和所在地出入境检验检疫机构报告。**第五十条**　国家出入境检验检疫部门发现已经注册的境外食品生产企业不再符合注册要求的，应当责令其在规定期限内整改，整改期间暂停进口其生产的食品；经整改仍不符合注册要求的，国家出入境检验检疫部门应当撤销境外食品生产企业注册并公告。**第五十一条**　对通过我国良好生产规范、危害分析与关键控制点体系认证的境外生产企业，认证机构应当依法实施跟踪调查。对不再符合认证要求的企业，认证机构应当依法撤销认证并向社会公布。**第五十二条**　境外发生的食品安全事件可能对我国境内造成影响，或者在进口食品、食品添加剂、食品相关产品中发现严重食品安全问题的，国家出入境检验检疫部门应当及时进行风险预警，并可以对相关的食品、食品添加剂、食品相关产品采取下列控制措施：（一）退货或者销毁处理；（二）有条件地限制进口；（三）暂停或者禁止进口。**第五十三条**　出口食品、食品添加剂的生产企业应当保证其出口食品、食品添加剂符合进口国家（地区）的标准或者合同要求；我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协定有要求的，还应当符合国际条约、协定的要求。**第七章　食品安全事故处置****第五十四条**　食品安全事故按照国家食品安全事故应急预案实行分级管理。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会同同级有关部门负责食品安全事故调查处理。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根据实际情况及时修改、完善食品安全事故应急预案。**第五十五条**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完善食品安全事故应急管理机制，改善应急装备，做好应急物资储备和应急队伍建设，加强应急培训、演练。**第五十六条**　发生食品安全事故的单位应当对导致或者可能导致食品安全事故的食品及原料、工具、设备、设施等，立即采取封存等控制措施。**第五十七条**　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接到食品安全事故报告后，应当立即会同同级卫生行政、农业行政等部门依照食品安全法第一百零五条的规定进行调查处理。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应当对事故单位封存的食品及原料、工具、设备、设施等予以保护，需要封存而事故单位尚未封存的应当直接封存或者责令事故单位立即封存，并通知疾病预防控制机构对与事故有关的因素开展流行病学调查。疾病预防控制机构应当在调查结束后向同级食品安全监督管理、卫生行政部门同时提交流行病学调查报告。任何单位和个人不得拒绝、阻挠疾病预防控制机构开展流行病学调查。有关部门应当对疾病预防控制机构开展流行病学调查予以协助。**第五十八条**　国务院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会同国务院卫生行政、农业行政等部门定期对全国食品安全事故情况进行分析，完善食品安全监督管理措施，预防和减少事故的发生。**第八章　监督管理****第五十九条**　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根据监督管理工作需要，可以对由下级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负责日常监督管理的食品生产经营者实施随机监督检查，也可以组织下级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对食品生产经营者实施异地监督检查。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认为必要的，可以直接调查处理下级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管辖的食品安全违法案件，也可以指定其他下级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调查处理。**第六十条**　国家建立食品安全检查员制度，依托现有资源加强职业化检查员队伍建设，强化考核培训，提高检查员专业化水平。**第六十一条**　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依照食品安全法第一百一十条的规定实施查封、扣押措施，查封、扣押的期限不得超过30日；情况复杂的，经实施查封、扣押措施的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负责人批准，可以延长，延长期限不得超过45日。**第六十二条**　网络食品交易第三方平台多次出现入网食品经营者违法经营或者入网食品经营者的违法经营行为造成严重后果的，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可以对网络食品交易第三方平台提供者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进行责任约谈。**第六十三条**　国务院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会同国务院卫生行政等部门根据食源性疾病信息、食品安全风险监测信息和监督管理信息等，对发现的添加或者可能添加到食品中的非食品用化学物质和其他可能危害人体健康的物质，制定名录及检测方法并予以公布。**第六十四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应当对餐具饮具集中消毒服务单位进行监督检查，发现不符合法律、法规、国家相关标准以及相关卫生规范等要求的，应当及时调查处理。监督检查的结果应当向社会公布。**第六十五条**　国家实行食品安全违法行为举报奖励制度，对查证属实的举报，给予举报人奖励。举报人举报所在企业食品安全重大违法犯罪行为的，应当加大奖励力度。有关部门应当对举报人的信息予以保密，保护举报人的合法权益。食品安全违法行为举报奖励办法由国务院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会同国务院财政等有关部门制定。食品安全违法行为举报奖励资金纳入各级人民政府预算。**第六十六条**　国务院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应当会同国务院有关部门建立守信联合激励和失信联合惩戒机制，结合食品生产经营者信用档案，建立严重违法生产经营者黑名单制度，将食品安全信用状况与准入、融资、信贷、征信等相衔接，及时向社会公布。**第九章　法律责任****第六十七条**　有下列情形之一的，属于食品安全法第一百二十三条至第一百二十六条、第一百三十二条以及本条例第七十二条、第七十三条规定的情节严重情形：（一）违法行为涉及的产品货值金额2万元以上或者违法行为持续时间3个月以上；（二）造成食源性疾病并出现死亡病例，或者造成30人以上食源性疾病但未出现死亡病例；（三）故意提供虚假信息或者隐瞒真实情况；（四）拒绝、逃避监督检查；（五）因违反食品安全法律、法规受到行政处罚后1年内又实施同一性质的食品安全违法行为，或者因违反食品安全法律、法规受到刑事处罚后又实施食品安全违法行为；（六）其他情节严重的情形。对情节严重的违法行为处以罚款时，应当依法从重从严。**第六十八条**　有下列情形之一的，依照食品安全法第一百二十五条第一款、本条例第七十五条的规定给予处罚：（一）在食品生产、加工场所贮存依照本条例第六十三条规定制定的名录中的物质；（二）生产经营的保健食品之外的食品的标签、说明书声称具有保健功能；（三）以食品安全国家标准规定的选择性添加物质命名婴幼儿配方食品；（四）生产经营的特殊食品的标签、说明书内容与注册或者备案的标签、说明书不一致。**第六十九条**　有下列情形之一的，依照食品安全法第一百二十六条第一款、本条例第七十五条的规定给予处罚：（一）接受食品生产经营者委托贮存、运输食品，未按照规定记录保存信息；（二）餐饮服务提供者未查验、留存餐具饮具集中消毒服务单位的营业执照复印件和消毒合格证明；（三）食品生产经营者未按照规定对变质、超过保质期或者回收的食品进行标示或者存放，或者未及时对上述食品采取无害化处理、销毁等措施并如实记录；（四）医疗机构和药品零售企业之外的单位或者个人向消费者销售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中的特定全营养配方食品；（五）将特殊食品与普通食品或者药品混放销售。**第七十条**　除食品安全法第一百二十五条第一款、第一百二十六条规定的情形外，食品生产经营者的生产经营行为不符合食品安全法第三十三条第一款第五项、第七项至第十项的规定，或者不符合有关食品生产经营过程要求的食品安全国家标准的，依照食品安全法第一百二十六条第一款、本条例第七十五条的规定给予处罚。**第七十一条**　餐具饮具集中消毒服务单位未按照规定建立并遵守出厂检验记录制度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依照食品安全法第一百二十六条第一款、本条例第七十五条的规定给予处罚。**第七十二条**　从事对温度、湿度等有特殊要求的食品贮存业务的非食品生产经营者，食品集中交易市场的开办者、食品展销会的举办者，未按照规定备案或者报告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产停业，并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罚款。**第七十三条**　利用会议、讲座、健康咨询等方式对食品进行虚假宣传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责令消除影响，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依照食品安全法第一百四十条第五款的规定进行处罚；属于单位违法的，还应当依照本条例第七十五条的规定对单位的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处罚。**第七十四条**　食品生产经营者生产经营的食品符合食品安全标准但不符合食品所标注的企业标准规定的食品安全指标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给予警告，并责令食品经营者停止经营该食品，责令食品生产企业改正；拒不停止经营或者改正的，没收不符合企业标准规定的食品安全指标的食品，货值金额不足1万元的，并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罚款，货值金额1万元以上的，并处货值金额5倍以上10倍以下罚款。**第七十五条**　食品生产经营企业等单位有食品安全法规定的违法情形，除依照食品安全法的规定给予处罚外，有下列情形之一的，对单位的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其上一年度从本单位取得收入的1倍以上10倍以下罚款：（一）故意实施违法行为；（二）违法行为性质恶劣；（三）违法行为造成严重后果。属于食品安全法第一百二十五条第二款规定情形的，不适用前款规定。**第七十六条**　食品生产经营者依照食品安全法第六十三条第一款、第二款的规定停止生产、经营，实施食品召回，或者采取其他有效措施减轻或者消除食品安全风险，未造成危害后果的，可以从轻或者减轻处罚。**第七十七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等部门对有食品安全法第一百二十三条规定的违法情形且情节严重，可能需要行政拘留的，应当及时将案件及有关材料移送同级公安机关。公安机关认为需要补充材料的，食品安全监督管理等部门应当及时提供。公安机关经审查认为不符合行政拘留条件的，应当及时将案件及有关材料退回移送的食品安全监督管理等部门。**第七十八条**　公安机关对发现的食品安全违法行为，经审查没有犯罪事实或者立案侦查后认为不需要追究刑事责任，但依法应当予以行政拘留的，应当及时作出行政拘留的处罚决定；不需要予以行政拘留但依法应当追究其他行政责任的，应当及时将案件及有关材料移送同级食品安全监督管理等部门。**第七十九条**　复检机构无正当理由拒绝承担复检任务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给予警告，无正当理由1年内2次拒绝承担复检任务的，由国务院有关部门撤销其复检机构资质并向社会公布。**第八十条**　发布未依法取得资质认定的食品检验机构出具的食品检验信息，或者利用上述检验信息对食品、食品生产经营者进行等级评定，欺骗、误导消费者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并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拒不改正的，处50万元以上100万元以下罚款；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第八十一条**　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依照食品安全法、本条例对违法单位或者个人处以30万元以上罚款的，由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决定。罚款具体处罚权限由国务院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规定。**第八十二条**　阻碍食品安全监督管理等部门工作人员依法执行职务，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第八十三条**　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等部门发现单位或者个人违反食品安全法第一百二十条第一款规定，编造、散布虚假食品安全信息，涉嫌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应当将相关情况通报同级公安机关。**第八十四条**　县级以上人民政府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及其工作人员违法向他人提供网络食品交易第三方平台提供者提供的信息的，依照食品安全法第一百四十五条的规定给予处分。**第八十五条**　违反本条例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第十章　附　　则****第八十六条**　本条例自2019年12月1日起施行。 |